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4
----------	-----

2022. 4. 1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6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4. 1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원 중단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논의필요
-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함)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에 근거한 바, 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도시지역의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의 기본업무 외에도 산불진압, 자연재해 지원활동 등 소방 지원업무도 증가하고 있어, 소방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위와 같은 소방수요 증가로 인한 소방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소방활동이 필요한 바, 집행부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 및 현장 대응능력강화 등을 도모하여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서울시와 소방서장에 권한이 전속되어 있는 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 조례안은 의용소방대가 수행하고 있는 재난 현장 소방업무 보조 역할과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위상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법」 제7조¹⁾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집행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용소방대법」 제16조²⁾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조례안이 명시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보면, ① 의용소방대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며 ③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④ 보조금 사용 내역이 불법 또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반환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의용소방대법」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의용소방대법」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의용소방대원 표창 근거 명시(안 제7조)

-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을 비롯하여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조례안에 대한 검토

가. 권한과 의무의 형평성 문제

-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황에 따른 신축적 운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의 편성, 운영 등은 「지방자치법」³⁾에 따른 지방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두지 않고, 「의용소방대법」을 제정하여 특별시장 등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기관사무로 분류하고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생략)

<표>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구분	법	규칙	서울시조례
설치(전담 의용소방대)	제2조	제2조	조례 제2조
임용기준	제3조		
임용권자	제3조		조례 제4조
해임권자	제3조		조례 제5조, 규칙 제4조
정년 및 조직	제5조(정년), 제6조(조직)	제7조, 제8조,	조례 제6조(조직)
교육 훈련	제13조	제18조	조례 제15조, 규칙 제8조
경비 부담	제14조		-
출동 수당(소집 수당)	제15조	제19조	제16조, 규칙 제9조
활동비 지원	제16조		
재해보상 등	제17조	제21조	조례 제18조, 규칙 제10조
장학금 지원			조례 제19조, 규칙 제11조
성과중심의 포상		제20조	조례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8조	제22조	조례 제22조

- 위와 같은 입법례는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다라도 의용소방대 편성·운영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 사례가 없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있음.
- 또한 의용소방대법령이 명시한 임용기준·임용권자·경비부담·각종 보상 등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보면 법과 시행령, 규칙, 서울시 조례에 분산하여 필요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의용소방대법 제16조 각주 2번 참조)

- 의용소방대가 화재복구피해와 비상소화장치 관리·주거취약시설 화재예방 운영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소방업무 보조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하겠음.
-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편성과 운영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함이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영역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상황인 바, 이는 입법상의 불비(不備)라고 판단됨.
- 선진분권국가의 ‘지방자치’ 역사와 연혁을 살펴보면, 화재예방 및 진압 등은 (초기)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역할이자 기능이었으며, 지방자치 영역에서 누락될 수 없는 자치행정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일선 소방서에 관한 관할 설정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보조금 신청 주체의 문제

-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주체를 의용소방대로 하고 있음.(안 제4조제1항)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내 보조기능을 맡고 있는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정단체인 바, 일종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다. 의용소방대원 표창 근거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

-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화재경계근무 및 예방·홍보 활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 강남구의용소방대 현황 자료

1) 정원/현원 현황 (2022.4.5.기준)

계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삼성지역대		영동지역대		역삼지역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40	202	40	33	40	32	20	17	20	20	20	17

수서지역대		개포지역대		세곡지역대		구룡전문대		산악전문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	17	20	16	20	19	20	13	20	18

2) 정원/현원 (남/녀) (2022.4.5.기준)

계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삼성지역대			영동지역대			역삼지역대		
정원	현원 (202)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40	남 81	여 121	남 -	여 40	남 -	여 33	40	남 26	여 6	20	남 4	여 13	20	남 7	여 13	20	남 6	여 11

수서지역대		개포지역대				세곡지역대				구룡전문대			산악전문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	남	여	20	남	여	20	남	여	20	남	여	20	남	여	
	3	14		7	9		7	12		9	4		14	4	

※여성의용소방대의 정원은 40명이며, 혼성 및 지역대는 모두 혼성의용소방대로 구성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진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4
----------	-----

발의연월일 : 2022. 4. 1.

발 의 자 : 복진경·안지연·김진홍·
최남일·이향숙·박다미
(이상6인)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 중단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필요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